

1. 개정이유

기계가스설비공사업·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공사 수행범위를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부합하게 확대하고,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불편해소를 위해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을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발주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계설비공사·난방공사(제1종)·난방공사(제2종)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(안 제8조의2)
- 나. 상대시장 진출 건설업체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(안 제10조제4항)
- 다.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종합·전문 업종의 사무실 등록기준이 동일하므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제외(안 별표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련 협회와 협의함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8조의2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(제1종)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(제1종)에 대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호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에 대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난방공사(제1종)

2. 난방공사(제2종)

3.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·변경공사

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(제1종)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(제1종)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하게

할 수 있다.

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(제2종)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(제2종)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제3항 중 “기관”을 “기관(이하 “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“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 할 수 있다.

별표 2 별첨을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(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)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.

별지

[별첨] 등록기준 점검항목(예시)

연번	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
1	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? ※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
2	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? ※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, 고용계약서 확인
3	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? ※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
4	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? (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)
5	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? (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)
6	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? ※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(입사일, 관할 공사현장 등) 및 근거서류 확인

※ 발주자 상황에 따라 점검항목 변경 가능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부대공사 판단기준)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영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 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사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8조의2(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부대공사 판단기준) ① 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의2(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(제1종)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(제1종)에 대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함께 수행</u></p>

<신 설>

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호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에 대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난방공사(제1종)

2. 난방공사(제2종)

3.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
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
치·변경공사

<신 설>

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(제1종)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(제1종)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(제2종)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(제2종)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계

